

대통령령 제2303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
- 제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시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제역(口蹄疫)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캐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제2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제2조의4(가축방역·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말한다.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동방역기구의 구성·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가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추가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치료 대상자가 부담

⑥ 제5항에 따른 상담치료와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4항에 따라 상담치료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분의 1”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 : 부상당한 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병성감정 결과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 다)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른 가축의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소만 해당한다)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역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소만 해당한다)

라.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3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4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3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4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마.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2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3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2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3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바.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보상금 상당액에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였거나, 다목 1)의 조치 중 1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2개 이하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 2)의 조치 중 1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2개 이하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의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태의 권고대상 가축이 해당 가축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살처분한 경우

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이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고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 항구나 공항에서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그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40, 병성감정 결과 감염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집유장·축산물 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 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 및 부화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차.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이 격리·역류되는 기간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카.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자

1) 수의사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축산 관계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제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

타.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된 도축장: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 평균도축두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 평균도축두수) × 해당 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 × 70%(도축장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아목 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	200	500
나.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2호	100	200	5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수산물검역사무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수산물검역사무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3호	100	200	500
라.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사.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500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자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법 제60조 제1항제5호	50 100 100 50 50	200 300 300 200 200	500 500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자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	50 100 100 50 50	150 150 150 100 100	300 200 200 200 200
차.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 100 100 50 50 50	150 150 150 100 100 100	300 200 200 300 100 200
카.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타. 법 제26조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파.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하.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가목 외의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6호	300 70 10 5	400 100 50 10	500 200 100 50
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나.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제2항제8호	100	200	300
더.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머.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